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

| 생산등록번호 | 소상공인정책과-11097 |
|---|---|
| 등 록 일 | 2021. 11. 29 |
| 결 재 일 | 2021. 11. 29 |
| 공 개 구 분 | 부분공개(5) |

| 주무관 | 소상공인정책담당 | 소상공인정책과장 | 일자리경제국장 |
|---|---|---|---|
| **이수진** | **이상원** | **김현미** | 전결 2021. 11. 29.<br>**김희용** |
| 협조자 | | | |

## 집합금지 · 영업제한업종 소기업 · 소상공인을 위한

# 경남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

### 주 요 내 용

❍ 사업기간 : 2021. 11. ~ 2022. 5.(7개월)

❍ 사업예산 : 1,440백만원(국비 720, 도비 720)

❍ 지원규모 : 6,000명

❍ 지원대상 : '20. 8. 16.이후 **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**
**'21년 하반기 노란우산 신규가입자**('21.7월~예산 소진시)

❍ 지원내용 : 노란우산 신규가입 이후 **6개월**간 **1인당 월 4만원 장려금 적립**
※ **도 자체사업**(경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) **대상자 중복지원**

**경 상 남 도**
**(소상공인정책과)**

집합금지 · 영업제한업종 소기업 · 소상공인을 위한

# 경남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

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**소기업·소상공인**의 **중층적 피해지원**을 위한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임

## ❑ 사업개요

❍ 사업기간 : 2021. 11. ~ 2022. 5.(7개월)

❍ 사업예산 : 1,440백만원(국비 720, 도비 7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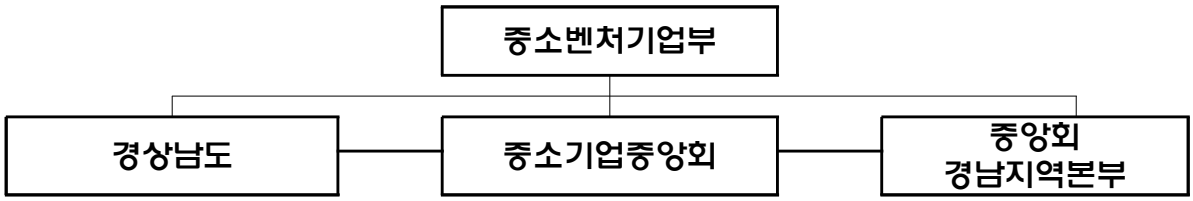
❍ 지원규모 : 6,000명

❍ 지원대상 : '20. 8. 16.이후 **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** 중 **'21년 하반기 노란우산 신규가입자**('21.7월~예산 소진시)

❍ 지원내용 : 노란우산 신규가입 이후 **6개월**간 **1인당 월 4만원 장려금 적립**

**※ 도 자체사업**(경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) **대상자 중복지원**

❍ 지원체계 : 중기부·중기중앙회·각 지역본부와 광역지자체 간 상호협력




| 조 직 | 업무 분장 |
|---|---|
| 중소벤처기업부 | ‣ 사업총괄<br>‣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<br>‣ 국비 교부 (지자체, 중앙회) |
| **경상남도** | ‣ **지방비 교부 (중앙회 경남지역본부)**<br>‣ **지원대상(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여부) 확인(시군협조)**<br>**※ [참고4] 서식참고** |
| 중소기업중앙회<br>(경남지역본부) | ‣ 사업운영 및 관리<br>‣ 세부운영계획 수립<br>‣ 신청·접수 및 지원 ※ '21.11.30. 시스템 접수시작<br>‣ 지원대상(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여부) 확인요청(중기부, 지자체) |

## ❑ 지원절차

❍ 지원신청 : 노란우산 가입시 **온라인, 은행방문, 상담사 등**을 통해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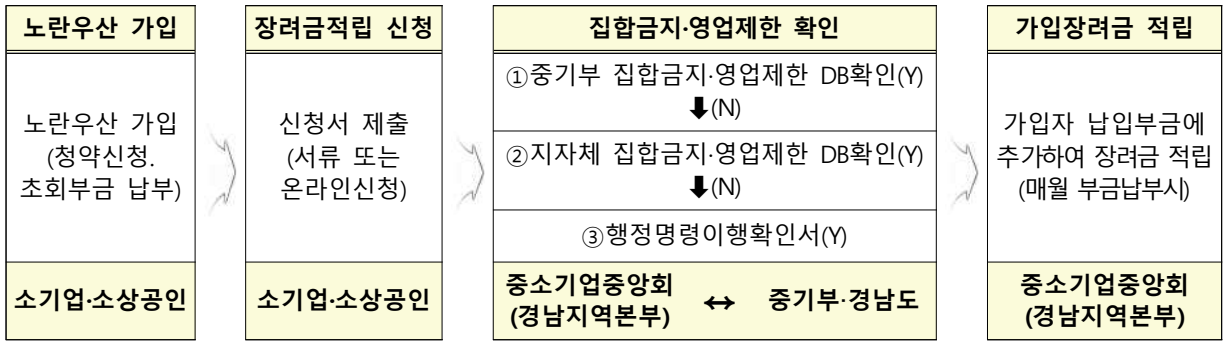
※ '21.7월~사업공고일('21.11.15.) 이전 가입자는 중앙회에서 신청 동의여부 확인 후 일괄 소급지원

❍ 대상확인 : 중기부가 보유중인 ❶집합금지·영업제한 DB*를 우선활용하고, 확인이 불가한 가입자는 ❷중앙회에서 지자체로 확인요청

* 희망회복자금DB : 집합금지 업체 및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액 감소 업체
** 중기부 DB로 확인이 안된 가입자 중 지원대상 여부는 지자체에서 별도 확인 후 중앙회로 회신(불가피한 경우 개별가입자에게 확인서 발급)

❍ 적립방법 : 가입일로부터 6회차 부금 납부시까지 분할적립

❍ 지원절차 : 노란우산 가입완료 후, 중기부 또는 지자체 집합금지·영업제한 조치 해당여부 확인 후 장려금 적립




## ❑ 추진현황

❍ '21. 7. ~ 9. : 중기부 제2차 추경 신규예산 편성 및 경남도 매칭비 확보

❍ '21. 11. : 사업계획수립(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-880호) 및 국고보조금 교부

## ❑ 향후계획

❍ '21. 12. : 업무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(경남도↔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)

❍ '22. 7. : 결과보고 및 사후정산(중기중앙회 경남지역본부→경남도→중기부)

참고 1. 노란우산공제 제도 1부.

2.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1부.
3. 소기업・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협약(안) 1부.
4.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서식 1부. 끝.

## 참고 1 노란우산(소기업·소상공인공제) 제도

### ❑ 제도 개요

❍ **(운영목적)** 소기업·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·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 제공

❍ **(운영근거)**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115조

❍ **(운영기관)** 중소기업중앙회('07. 9월 사업 개시)

### ❑ 주요내용

❍ **(가입대상)** 소기업·소상공인 대표자(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포함)

* 제외업종 : 주점업(일반유흥주점, 무도유흥주점, 단란주점), 무도장, 도박장, 비의료 안마업

❍ **(납입부금)** 월 5~100만원(1만원 단위), 월납 또는 분기납

❍ **(납부기간)**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(별도 만기 없음)

❍ **(공제사유)** 폐업, 사망, 노령(만 60세 이상), 퇴임(법인 대표자, 부상·질병)

* 노령공제 : 만 60세 이상으로, 10년 이상 부금 납부시 지급

❍ **(지급금액)**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

* 기준이율('21.2분기) : 연 2.2%. 단, 폐업·사망시 연 2.5%(기준이율+0.3%)

❍ **(기타혜택)** 공제부금 소득공제(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 한도), 공제금 수급권 보호(압류·양도·담보 금지) * 예금자보호법은 미적용

❍ **(가입현황)** '21년 2,149,775명 ※ 경남 214,158명

❍ **(가입신청)** 청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, 1회차 부금 납입

- 구비서류 : ①청약서, ②사업주 신분증, ③사업자 등록증, ④법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, ⑤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재무제표 또는 부가세확인증명서 등)

※ 노란우산 가입채널
- ㅇ 중소기업중앙회(각 지역본부)
- ㅇ 금융기관(은행) : 기업,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KEB하나, 우체국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, 수협, 새마을금고
- ㅇ 공제상담사, 협동조합, 콜센터, 인터넷 등

# 참고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**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**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.10.17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
|---|---|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|
| 2. 음료 제조업 | C11 |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
| 15. 가구 제조업 | C32 |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|
| 17. 수도업 | E36 | |
| 18. 농업,임업 및 어업 | A |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|
| 19. 광업 | B | |
| 20. 담배 제조업 | C12 |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| 29. 건설업 | F |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| H |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| G |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 (E36 제외) |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|
| 35. 부동산업 | L | |
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N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
| 41. 교육 서비스업 | P |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|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**참고 3**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협약(안)

## 집합금지 · 영업제한업종 소기업 · 소상공인을 위한
# 경상남도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협약서

경상남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와 중소기업중앙회(이하 “중앙회” 라 한다)는 집합금지 · 영업제한업종 소기업 · 소상공인을 위한 소기업 · 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(이하 “지원사업” 이라 한다)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1. 사 업 명 :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
2. 사업기간 : 2021년 11월 ~ 2022년 5월
3. 사 업 비 : 1,440,000,000원

**제1조(목적 및 내용)** 본 협약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 · 소상공인의 중층적 피해지원을 위해, 소기업 · 소상공인공제(노란우산) 신규가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** “도” 와 “중앙회” 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.

**제3조(상호협력)** “도” 와 “중앙회” 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하기관 및 홍보물을 통해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.

**제4조(사업내용)**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지원대상 :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· 소상공인 중, ’21.7월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
2. 지원규모 :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6개월간 최대 월 4만원 장려금 적립
3. 지원방식 :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정액장려금 적립

**제5조(보조금 교부 및 사용)** ① “중앙회” 는 본 협약 체결 후 “도” 에 “지원사업” 추진계획서(이하 “사업계획서” 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.

② “도” 는 사업예산의 범위 안에서 “사업계획서” 를 승인하되, 필요한 경우 수정 ·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.

③ “도” 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“사업비” 라 한다)를 “중앙회” 에게 교부한다.

④ “중앙회”가 제1항에 따라 “도”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서면으로 “도”에 제출한다.

⑤ “중앙회”는 “도”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장려금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**제6조(결과보고 및 정산검사)** ① “중앙회”는 협약이 해지되었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(실적 및 정산결과 포함)를 작성하여 “도”에 제출하여야 하며, 결과보고서에는 그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“도”는 “중앙회”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한다.

③ “중앙회”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“도”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협약의 효력)** 본 협약은 사업기간 내에 효력이 있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가 완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.

1. 지원사업 및 행사수행과 관련하여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건·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진행되는 경우
2. “도”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
3. 지도·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

**제8조(기타)**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도”와 “중앙회”가 협의하여 정한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1년 11월 일

경상남도

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

K-BIZ 중소기업중앙회

회장 김기문

**참고 4** **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서식**

#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

※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함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**사업자등록번호** | | **대표자 성명** | |
| **업체명** | | | |
| **사업장 주소** | | | |
| **행정조치 유형** (√ 표기) | ☐ 집합금지 ☐ 영업제한 | | |
| **이행여부** (√ 표기) | ☐ 이행 ☐ 위반 | | |
| **용도** |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장려금 적립대상 확인 | | |

위 사업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협조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**년 월 일**

**지자체장** (직인)

발급번호 :

**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**